

중국의 향진기업회계제도

최상문

본 연구의 목적은 향진기업회계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현행 향진기업의 재무회계제도와 종전의 제도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변동과 특징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이 연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향진기업의 회계제도는 1980년 《농촌인민공사회계제도》의 '인민공사시기의 회계제도', 1986년 《향진기업재무제도》, 《향진기업회계제도》, 《향진기업 원가지출범위에 관한 규정》 등의 '종전제도', 그리고 1993년 7월 1일부터 《기업재무통칙》과 《기업회계준칙》에 근거하여 1993년 4월 15일 공포된 《통지》와 두 가지의 《규정》에 따른 '현행제도' 등 3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현행 향진기업 재무회계제도의 회계처리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업종별 기업재무제도의 규정을 근거로 하며, 각 지구 및 각 부문의 향진기업재무에 관한 보충규정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첫째, 향진기업의 주판재정기관은 재정부문이다. 국가유관기관의 정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향진기업은 관리비용 중에서 납부향진기업관리비를 계산하여야 하고, 당중앙과 국무원의 유관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향진기업은 납부소득세지급전에 향·촌납부 후의 이윤 10%를 사회성 지출비용으로 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8조). 향진기업관리비와 사회성지출비용을 처리하기 위하여 '應交管理費:미지급관리비'와 '應交鄉村金:미지급향촌금' 2개의 계정과목을 추가로 설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둘째, 향진기업의 출자자본금 중 향촌집체자본금의 단독출자를 인정하고(3조), 향진기업이 경영책임제를 실시한 후에 발생할 집체소유제를 개체소유제로의 변경, 주식화한 집체자산의 개인에 대한 분배는 결손전보 후의 이익잉여금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 주식액면가액의 6%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익잉여금을 배당금으로 분배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당금분배 후 법정이익잉여금이 주체자금의 25%보다 낮을 수 없다.

셋째, 향진기업소득세납부 후의 이윤은 기업재무제도의 규정된 순서에 따라 분배한 후 공익금 공제후 '계약배당금'형을 추가할 수 있다. 계약인이 계약(合同)규정의 지표를 완성한 후, 향진기업은 계약규정에 따라 세차감후이윤 중 계약인에게 계약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향진기업이 계약규정에 따라 세차감후이이윤 중에서 계약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에는 '미지급이익'과목에서 처리한다.

넷째, 중서부와 동부지역 등 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지역의 향진기업은 향진기업의 직공평균임금이 국유기업의 직공평균임금보다 낮을 때 '成本工資制度:원가임금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가임금표준도 확정하여야 한다. 원가임금제도를 수행하는 향진기업은 임금의 지급, 원가임금의 배분, 원가임금과 실제발생임금과의 차액 등을 '미지급임금'과목에서 계산한다. 그리고 모든 기업은 직공의 임금총액 중 2%를 '납부조합경비'로 계산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향진기업에 대해서는 '문체활동비'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북방정책의 최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통상 및 정책을 회계적 사고에 따라 구조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한국경제의 북방정책수행에 일조하기 위한 일련의 중국회계제도에 관한 연구의 하나이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 발표한 ‘중국의 국영기업회계(1988)’, ‘중국회계의 개념구조(1988)’ ‘중국의 회계제도현황(1989)’, ‘중국의 중외합자기업회계제도(1990)’, ‘중국의 집단소유와 회계제도 I (1992)’에 관련된 연구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산업 내에서 아직도 농업이 총국민생산액의 약 1/2을 점하고 있는 농촌의 기업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 즉 향진기업 회계제도에 대한 연구이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면을 鄉, 읍을 鎮이라고 부르는데 ‘향진기업’이란 한국의 ‘농촌 새마을공장’과 비슷하다.

중국과의 통상외교뿐만 아니라 수교를 하는 데에서 수교대상국의 산업 중 과반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주체의 관리체계에 대한 구조적 이해 없이는 당해지역의 시장진입은 물론이고 실질적 수교 및 통상의 효과를 얻기 힘들 것이다.

향진기업은 1993년 현재 전국에 2,321만개가 있으며 이들이 중국공업생산의 30%와 농촌사회 총생산액의 60%를 생산하고 있다. 경영하는 사업도 다양하고 이중 2/3가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중국 전체농촌인력의 25.4% 가량을 흡수하며 총고용인원은 11,278만을 해야린다(1994, 국가통계국). 이것은 지금 사회주의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소유형태 중 중요한 집체소유형태의 전형적인 것이므로, 향진기업의 회계제도에 대한 연구는 중국사회 경제권의 개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중국에 대한 북방정책 수행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II. 향진기업회계제도의 변혁배경

1. 향진기업회계의 개념과 전통제도

향진기업회계는 회계의 기본이론, 기본지식과 기본방법을 향진기업에 응용한 전문업종회계중의 하나이며 향진기업과 함께 발전하였다. 농업합작화 시기에 공업의 부차적인 업무가 향진기업의 씨앗이며, 이러한 향진기업을 대상으로 계산한 것을 향진기업회계의 기점으로 본다. 그 이후 재정부와 농업부가 1980년 《농촌인민공사기업회계제도》를 제정 공포를 하였다. 인민공사기에 사대기업(社隊企業)에 대한 계산이 사대기업회계의 기초를 이루었고, 향진기업회계의 전신이 되었다. 1984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농촌경제체제 개혁부서에서 사대기업을 향진기업으로 개명한다는 문건을 발표함으로써 사대기업회계가 향진기업회계로 바뀌어 지금까지 발전하게 되었다(于玉林, 1992:2, 成都市教材委員會, 1992:2-3). 인민공사회계제도¹와 1986년 재정부와 농목어업부가 제정 공포

한 《향진기업재무제도》, 《향진기업회계제도》 그리고 《향진기업 원가지출 범위에 관한 규정》¹ 등의 규정에 따른 제도(이후 '종전제도'³로 약하여 사용함)는 과거 십수년 동안 중국 향진기업경제를 계산하는 근거가 되었고, 이 제도의 제정, 공포 및 집행은 향진기업이 발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전통적 《향진기업회계제도》의 주요한 내용에는 투자기금계산, 차입자금계산, 고정자산구입과 감가상각의 계산, 유동자산과 무형자산의 계산, 경영업무의 계산과 수입 및 이윤의 계산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회계제도의 변혁배경과 현행제도

종전 제도는 향진기업 발전 초기의 일반적 특징을 가지고 향진기업과 함께 출현한 것이다. 계산제도에 관련된 향진기업의 전통적인 재무회계제도는 국유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회계제도와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적응성과 광범한 활동성을 구비하고 있었다. 이러한 적응성과 활동성은 향진기업에 있어서 여러 계층의 유관부문과 여러 업종들의 다양한 특징을 수용할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개혁의 목표가 확립됨에 따라서 중국 국내시장의 내용은 크게 변화했다. 이 변화과정 중에서도 특히 향진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여, 많은 향진기업이 지역적 제한을 벗어나 지금은 국제화 과정에 접어 들고 있다. 전통적인 재무회계제도는 ① 시장경제의 발전수요에 부적합, ② 투자주체 다원화에 대한 부적합, ③ 향진기업의 발전수요에 부적합 등의 이유로 이렇게 신속히 발전하는 향진기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전통적 향진기업 회계제도를 개혁한 성과는 《기업재무통칙》, 《기업회계준칙》에 따른 《규정》의 제정을 들 수 있다(厲以寧, 1993: 107-108).

《기업재무통칙》과 《기업회계준칙》이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재정부 부장령 형식으로 공포됨으로써, 기업재무회계에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업재무회계의 개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제1단계는 《기업재무통칙》과 《기업회계준칙》의 제정이다. 이 통칙과 준칙은 중국의 '기업회계의 제도적 기본법규'로서 기업재무관리의 기본원칙을 명확히 한 것으로, 회계활동을 규제하고 기업재무회계 전체를 통일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제2단계는 《기업재무통칙》과 《기업회계준칙》을 근거로 각 업종별로 기업재무회계업

1 최상문, 1992, "집단소유생산공동체의 회계제도(1)", 윤종안박사 회갑기념논문집:19-45 참조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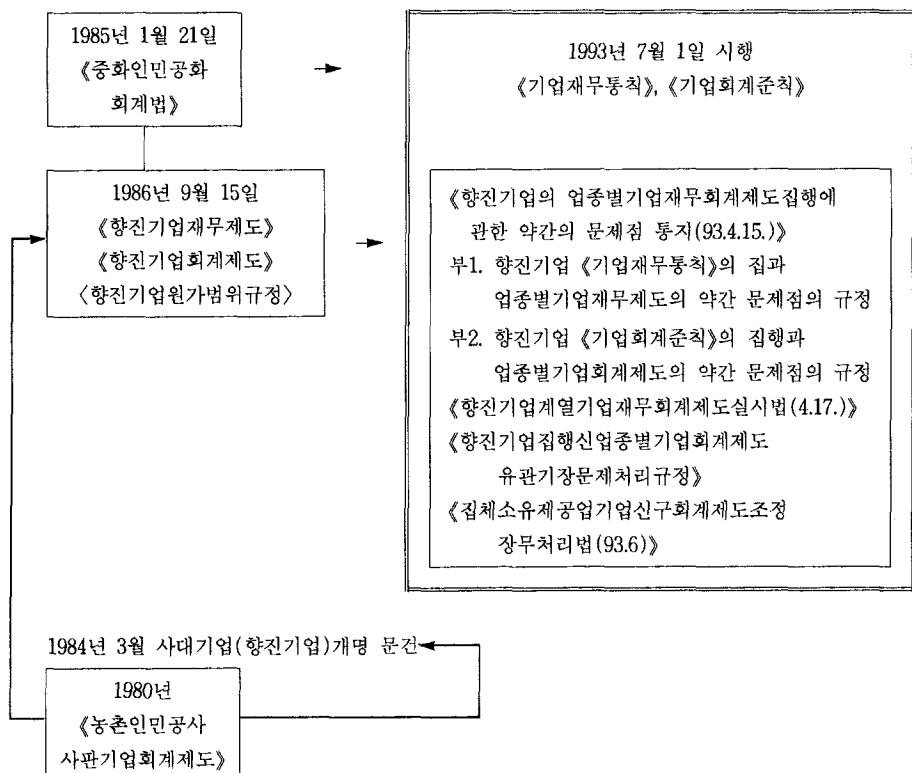
2 財政部農牧漁業部 制定, 1986, 《關於鄉鎮企業成本開支範圍的規定》.

3 종전 향진기업의 회계제도에 대한 설명은 다음 서적을 참조하기 바람. 浙江省鄉鎮企業局, 1985: 沈益康, 1986: 吳敬瑗(Wu, Jing Yuan), 1987: 中國新技術創業投資公司, 1988: 張福輝(Zhang, Fu Chi), 1988: 本書編寫組, 1989: 張雪年等(Zhang Xue Nian Deng), 1990: 楊樹枝(Yang, Shu Qi), 1990: 鄭漢清等(Zou Han Qing), 1990: 于玉林(Yu, Yu Lin), 1991: 干慶坦, 周振洲, 蔡遂(Gan, Qing Tan), 1991: 安福仁(An, Fu Ren), 1992: 鄧伯銘(Deng, Bai Xi), 1992: 于玉林(Yu, Yu Lin), 1992: 成都市教材委員會, 1992.

무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업종별 기업재무회계제도'를 제정한 것이다. 이는 각 업종별 특징과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써 《기업재무통칙》과 《기업회계준칙》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들의 업종은 공업, 농업, 상품유통, 교통운송, 시공 및 건물 토지의 개발, 여행 및 음식 서비스업, 우편 전신, 금융 및 보험, 대외경제합작, 영화 및 신문출판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기업의 소유형태별 재무회계제도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기업재무통칙》과 《기업회계준칙》에 따른 업종별 기업재무회계제도는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제3단계는 기업이 제1단계와 제2단계를 기초로 기업의 실제상황에 따라 기업내부의 재무관리를 위한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기업재무제도의 규정을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회계계산에 대한 요구와 회계보고서의 표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회계과목을 증설하거나 감소시켜 회계계산을 규제할 수 있다.

〈그림 1〉 향진기업회계제도의 변천과정



이 3단계 기업회계제도의 개혁과정에서 향진기업의 재무회계업무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986년에 제정한 향진기업의 재무회계제도에서 진일보하게

되었다. 1986년 재정부 농업부가 제정한 《향진기업재무제도》, 《향진기업회계제도》 그리고 《향진기업 원가지출 범위에 관한 규정》 등을 1993년 7월 1일을 기해 시행을 정지하고, 형식상으로는 향진기업에 대한 한 개의 단독 재무회계제도를 제정하지 않았으나, 《기업재무통칙》과 《기업회계준칙》을 근거로 하여, 업종별 세부 기업재무회계제도를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향진공업기업은 공업기업 재무회계제도를, 향진농업기업은 농업기업 재무회계제도를, 향진상품유통기업은 상품유통기업 재무회계제도를 시행하고, 그리고 독립채산 향진기업이 여러 업종의 생산경영에 참여할 때는 주요 경영항목에 따라 해당 업종의 기업재무회계제도를 확정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당과 국가의 향진기업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고, 향진기업 특유의 경제활동을 반영하며, 향진기업의 재무관리와 회계계산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업종별 향진기업에 따른 기업재무회계제도의 시행을 수정하였다. 즉, 1993년 7월 1일을 기해 정지된 종전의 향진기업 재무회계제도에 대하여 다시 별도로 재무회계제도를 제정하지 않고, 《기업재무통칙》, 《기업회계준칙》을 수정·보충함으로써 재정부는 1993년 4월 15일 (93) 재농자 제49호로 《향진기업의 업종별 기업재무회계제도집행에 관한 약간의 문제점 통지》⁴를 공포하였다. 이를 근거로 《향진기업〈기업재무통칙〉의 집행과 업종별기업재무제도의 문제점 규정: 이후 ‘재무규정’으로 약칭》⁵과 《향진기업〈기업회계준칙〉의 집행과 업종별기업회계제도의 문제점의 규정: 이후 ‘회계규정’으로 약칭》⁶ [이후 이들 문건과 두 규정을 줄여 《규정》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향진기업의 재무회계제도는 이 《규정》들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이들 《규정》에 따른 현행 회계제도⁷와 1986년 제정되고, 1993년 7월 1일 종료된 종전의 향진기업 회계제도⁸와 다르다. 향진기업회계제도의 변천과정을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결국 중국의 현행 재무회계제도는 기업회계제도를 개혁⁹한 최신의 성과로서 중화인민

4 財農字 第49號, 1993 《關於鄉鎮企業貫徹執行分行業的企業財務會計制度若干問題的通知》.

5 財農字 第49號 附:1, 1993 《對鄉鎮企業貫徹執行〈企業財務通則〉和分行業的企業財務制度若干問題的規定》.

6 財農字 第49號 附:2, 1993 《對鄉鎮企業貫徹執行〈企業會計準則〉和分行業的企業會計制度若干問題的規定》.

7 재정부가 1992년 제정 공포하고, 1993년 7월 1일부터 실행되는 《기업재무통칙》 및 《기업회계준칙》과 1993년 4월 15일 (93) 재농자 제49호로 공포된 《통지》와 이를 근거로 발표한 《재무제도규정》 및 《회계제도규정》 등의 〈통칙〉, 〈준칙〉, 〈통지〉, 〈규정〉 등을 모두 포함하여 ‘현행제도’라 한다.

8 1986년 재정부와 농목어업부가 제정 공포한 《향진기업재무제도》, 《향진기업회계제도》 그리고 《향진기업 원가지출 범위에 관한 규정》 등의 규정에 따른 제도.

9 또 다른 개혁의 방향은 股份制: 주식제 기업재무관리와 회계계산을 들 수 있다. 중국 국가경제체제 개혁위원회등에서 1992년 5월 공표한 《股份制企業試點辦法: 주식제기업시험법》과, 전국인대 1993년 12월에 통과하고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公司法: 회사법》은 중국기업의 주식제 개혁이 확정된 규범화된 모델로서, 중국의 주식제 기업이 고분유한공사와 유한책임공사 두 종류의 조직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기업의 주식제 개혁은 1992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股份制試點企業財務管理若干問題的暫行規定: 주식제시험 기업재무관리를

공화국이 성립된 이래 가장 놀라운 변혁을 이룬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기업 재무관리와 회계제도에 관한 문건 등의 유관 규정들을 바탕으로 하여 현행 향진기업회계제도를 설명하기로 한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회계처리의 일반 문제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III. 회계처리의 일반문제

1. 회계준칙과 회계제도

회계준칙은 기업이 회계처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의 법규와 정책적규정이다. 그리고 이것은 회계처리를 제도화하고 회계처리의 기본 규범을 조직화한 것이다. 이것은 기본 준칙과 구체적 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 준칙은 회계처리의 기본적 요구에 관한 것이며, 구체적 준칙은 회계처리의 구체적 업무에 관한 것이다.

중국 회계업무에서 기본준칙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재정부가 1992년에 제정 공포하여 1993년 7월 1일부터 실행되는 《기업재무통칙》과 《기업회계준칙》을 말한다. 이 《기업회계준칙》의 공포와 실시는 중국이 건국된 이래 실시한 회계정책 중 최대의 개혁이며, 전통적 회계제도에서 분산되어 있는 회계처리의 기본규범과 지도원칙을 총괄함으로써 장기간 서로 다른 소유제와 서로 다른 업종별 회계처리표준을 통일하였다. 따라서 중국내에 있는 향진기업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회계제도는 기업이 회계업무를 처리하는 데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으로서, 그 방법과 절차를 모두 규정한다. 그 내용은 회계업무의 기본규칙, 회계과목 설치와 그 계산 내용, 장부조직과 기장방법, 경제업무의 회계처리, 회계보고서의 편제 및 감사, 회계인원의 직책과 권한 등을 포함한다.

또한 회계제도는 경제관리제도의 하나이다. 중국의 전통적 회계제도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회계제도가 하나 있었으나, 서로 다른 소유제, 서로 다른 부문별 기업, 기타의 회계제도도 서로 다르고 그리고 각 기업이 사용하는 회계처리표준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 회계정보의 비교가능성이 부족하였다. 중국에서는 《기업재무통칙》과 《기업회계준칙》을 제정 공포한 이후에, 업종별 회계처리제도도 제정하였다. 이들 업종별 회계처리제도는 기업회계준칙의 요구에 따라 제정되었으며, 전통적 회계처리제도와 매우 서로 다르다(厲以寧, 1993:110).

위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잠정적 규정》, 《股份制試點企業會計制度: 주식제시험을 위한 기업회계제도》 및 《股份制試點企業審計暫行規定: 주식제시험기업의 감사에 대한 잠정규정》과 같은 기업재무회계, 재무관리와 쉽게 감독 방면의 문건 등을 포함한 한 계열의 많은 법규들을 국무원의 유관기관이 제정 공포하였다. 이러한 한 계열의 규정제도들이 주식제기업회계업무의 규범을 이루고, 나아가 향진기업의 주식제도 개혁중 재무회계업무의 변혁의 바탕을 이룬다(厲以寧, 1993:106-136).

2. 《규정》과 향진기업회계제도

(1) 현행 향진기업의 재무회계제도

《기업재무통칙》을 보증하고, 《기업회계준칙》과 업종별 기업재무회계제도를 순조롭게 실시하기 위하여, 재정부는 향진기업에 대하여 《기업재무통칙》, 《기업회계준칙》을 준수하고, 업종별 향진기업의 재무회계제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향진기업의 실제 상황에 맞게 《규정》을 제정하였다. 제정된 《규정》의 기본정신은 향진기업 특유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업종별기업재무회계제도에 관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업종의 향진기업이 집행하여야 할 재무회계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다.

《규정》은 재무규정과 회계규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재무규정은 모두 10조로 되어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財政部農財司, 1993: 3-4).

- 1) 향진기업의 주관재정기관은 재정부문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 2) 당중앙과 국무원의 유관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향진기업은 납부소득세지급전에, 향, 촌 납부후의 이율 10%를 사회성 지출비용으로 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¹⁰
- 3) 국가유관기관의 정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향진기업은 관리비용 중에서 국가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향진기업관리비를 계산하여야 한다.¹¹
- 4) 향진기업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향진기업이 경영책임제를 실시한 후에 발생할 집체소유제를 개체소유제로의 변경이나, 주식화한 집체자산을 개인에게 어떻게 분배하는나¹²의 문제와 발생한 이익은 계약인(承包人)에게 어떻게 지급하는나 등¹³과 같은 실제로 발생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유관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향진기업의 출자자본금 중 향촌집체자본금의 단독 출자를 인정하고 있다.¹⁴
 - ③ 중서부와 동부지역 등 경제가 발달되지 않은 지역의 향진기업은 향진기업의 직

¹⁰ 鄉村企業用于補助社會性開支的費用按利潤的 10% 在交納所得稅前列支, 提取后上交鄉, 村 (재무규정 제8조).

¹¹ 鄉村企業要按國家規定上交鄉鎮企業管理費, 在管理費用中列支 (재무규정 제6조).

¹² 實行經營承包責任制的鄉鎮企業, 其性質和隸屬關係不變. 鄉鎮企業的所有權仍歸投資者所有. 鄉, 村主管部門或董事會要與承包人簽定合同, 明確雙方的責任和權益. 承包人要提供必要的財產擔保. 在承包期內, 鄉鎮企業要執行有關行業的企業財務會計制度 (재무규정 제2조).

¹³ 鄉鎮企業交納所得稅後的利潤, 按照企業財務制度規定的順序分配時, 在提取公益金之后加上‘承包分利’一項. 承包人完成合同規定的指標后, 鄉鎮企業按合同規定從稅后利潤中支付給承包人的承包獎 (재무규정 제9조).

¹⁴ 鄉鎮企業蒐集的資本金, 分為國家資本金, 鄉村集體資本金, 法人資本金, 個人資本金以級外商資本金等. 鄉村集體資本金為有權代表鄉或村農民的部門或組織以鄉或村集體資產投入企業形成的資本金 (재무규정 제3조).

공평균임금이 국유기업의 직공평균임금보다 낮을 때는 원가임금제도(成本工資制度)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가임금표준(成本工資標準)도 확정하여야 한다.¹⁵

5) 업종별 기업재무제도의 규정을 근거로 하며, 각 지구, 각 부문의 향진기업재무에 관한 보충규정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회계 규정'은 모두 7조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應交管理費:미납관리비'¹⁶와 '應交鄉村金:미납향촌금' 2개의 계정과목을 추가로 설정하고 이 계정의 사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② 원가임금제도의 실시에서 향진기업이 해야 할 임금계산, 문체활동비의 계산, 계약인(承包人)에 대한 계약소득(承包所得)의 계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③ 각 지구, 각 부문의 향진기업재무에 관한 보충규정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2) 향진기업의 주관재정기관

《기업재무통칙》과 업종별 기업재무제도 여러 곳에서 주관재정기관의 개념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업기업재무제도는 '기업은 주관재정기관의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공업기업재무제도 제4조)'. '기업은 국가통일규정에 따라 구체적 감가상각방법과 내용년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시 개시년도 전에 주관재정기관에 이에 대한 내용을 보고를 하여야 한다(공업기업재무제도 제31조)'. '기업의 감가상각방법과 내용년수가 일단 확정되면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변경년도 이전에 반드시 기업이 그 이유를 제출하여 주관재정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여비교통비표준은 기업이 해당지역의 정부가 정한 규정의 표준을 참조하여,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스스로 표준을 정하여 주관재정기관에 마련된 안을 보고하여야 한다(공업기업재무제도 제48조)'. '기업은 주관재정기관등 정부부문과 기타 기업과 관계가 있는 재무제표사용자들에게 재무보고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공업기업재무제도 제83조)'. '기업이 제정한 기업내부재무관리방법에 관한 내용을 주관재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공업기업재무제도 제88조)'. 중국의 기업재무관리체제에 따른 재무관리직능을 담당하는 부

¹⁵ 鄉鎮企業職工平均工資低于當地統計部門國有企業職工平均工資的企業，要實行成本工資制度。成本工資標準以上年度國有企業職工平均工資為依據，實際支付工資與成本工資標準的差額，列入盈余公積金（財務規定 第5조）。

¹⁶ 應交管理費의 표기는 '잉자오 꾸안리웨이'로 중국식 발음으로 표기하거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되는 뜻 가운데 가장 가까운 '미납관리비'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미납관리비'는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뜻을 전달하기 힘들고 '잉자오 꾸안리웨이'나 應交管理費는 우리에게는 생소하기 때문에, 이를 절충하여 계정과목에 한하여 먼저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정과목을 한자로 표시하고,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목 가운데 가장 뜻이 가까운 계정과목을 '應交管理費:미납관리비'와 같이 표시한다. 그러나 동일한 과목을 사용하거나 뜻이 동일할 때는 한글로 표기한다. 그리고 중국식 발음표기는 부록의 계정과목을 참조하기 바란다.

문은 재정부문을 제외한 세무부문과 건설은행을 들 수 있지만, 향진기업에만 한정한다면 주관재정기관은 재정부분에 한정된다.

과거의 재정부문관리는 향진기업재무회계의 체제와 일치 될 뿐만 아니라, 《기업재무통칙》, 《기업회계준칙》과 업종별 기업재무회계제도 실시 후 재정부문의 계속적인 직능별 관리를 바탕으로 한 각 업종별 기업재무회계에 대한 요구에 부합된다. 종전의 재정부, 농업부가 제정한 향진기업재무회계제도에서 향진기업은 몇 가지 정책상의 필요를 제외하면 재정부문과 향진기업 행정주관부문의 동의 외에 세무부문의 참여가 필요하게 된다. 예를 들면 종전 향진기업재무제도의 ‘사회기술진보로 낙후된 설비를 선진설비로 대체할 기업과 국가 규정에 따라 원료의 소모가 많은 설비를 폐기하려는 기업은 그 내용을 재세부문(財稅部門)에 보고하여야 한다(향진기업재무제도 제22조)’, ‘고정자산의 변동내용을 재세부문에 보고를 해야한다(향진기업재무제도 제25조)’, ‘장기미회수채권중에서 회수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한 것에 대하여 재세부문의 동의를 얻어 대손손실을 계산할 수 있다(향진기업재무제도 제31조)’, ‘기업의 원가입금의 구체적 표준은 향진기업 행정주관부문과 재세부문이 해당지역의 실제정황을 근거로 정한다(향진기업재무제도 제34조)’.

종래 향진기업재무제도의 제22조, 제25조, 제31조에 나오는 세무부문의 참여 문제와 원가입금표준의 결정에 대해서도 이미 재정부가 재정·공포한 《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즉 향진기업이 《기업재무통칙》과 업종별 기업재무제도를 집행하는 데에서 이와 관련되는 문제는 다만 주관재정기관(즉 재정부문)에 그 내용을 비준받는 것으로 충분하며, 세무부문에 다시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향 또는 진의 재정부문이 이미 만들어져 재정작용이 잘 되고 있는 지구에서는 향진기업의 주관 재정기관은 마땅히 향이나 진의 재정부문이다. 그러나 향이나 진의 재정부문이 아직 없거나 있기는 하지만 아예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구에서는 현 급의 재정부문이 향진기업의 주관재정기관이 된다. 기타 지구 또는 기타 소유제의 기업과 향진기업이 연합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투자액에 비례하여 주관부문이 확정된다. 그리고 연합경영으로 투자자의 수가 많기 때문에 투자비례로 주관재정기관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투자자들간의 협의를 거친 후에 재정부문의 동의를 얻어 주관재정기관을 확정할 수 있다(財政部農財司, 1993:4-6).

IV. 계정과목과 회계보고

1. 자산회계

(1) 화폐자금과 단기투자자산

화폐자금은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화폐형태로서 유보된 자금으로서 생산활동에서 중

요한 유동자금을 말한다. 화폐자금은 ‘현금’, ‘銀行存款：은행예금’, ‘기타화폐자금’ 등이 포함된다(王慶玲, 1993:48).

향진기업은 현금수급업무가 비교적 많을 뿐만 아니라, 현금수지 전수도 빈번하여 차오가 발생할 기회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현금관리조례』에 따라 엄격히 관리한다(王慶玲, 1993:49). 향진기업의 은행예금은 기업이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에 예금한 화폐자금을 말한다. 국가의 화폐자금관리를 위한 유관 규정에 따르면, 모든 기업은 반드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예금구좌를 개설하고 모든 화폐자금은 은행을 통하여 집중관리하도록 하고 있다(王慶玲, 1993:53).

향진기업의 기타 화폐자금은 향진기업의 특성과 그 용도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현금과 은행예금을 제외한 화폐자금을 총괄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기타화폐자금’과목을 설정하고 있다.

종전 제도에서 기업의 대외투자업무에 대해서는 ‘國庫券’(또는 상장된 지역에서는 ‘유가증권’)과 ‘대외투자’의 2개의 회계과목이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투자기간의 장단을 기준으로 ‘단기투자’와 ‘장기투자’ 2개 과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國庫券：유가증권’과목은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로 나누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두가지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財政部農財司, 1993:17), (王慶玲, 1993:61-62).

첫째, 회계제도의 유관 규정에 대한 변화이다. 종전 제도에 따르면 현금수지기준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이자를 현금으로 받았을 때 ‘유가증권이자’로 기입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발생주의원칙을 채용하기 때문에 현금을 받지 않아도 기한이 도래하면 ‘유가증권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둘째 재무제도의 관련계정에 대한 변화이다. 종전 제도에 따르면 유가증권의 이자수입은 ‘전용기금-발전기금’과목을 통하여 기업에 기금으로 남겨 두어야 하나, 현행 제도에 따르면 각종 채권의 계산된 이자수입은 ‘당기투자수익’으로 처리 한다.

향진기업이 股票：주식을 구입하는 경우는 상장된 주식을 구입한 경우와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구입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종전 제도에 따르면 주식에 대한 과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증권’과목이나 ‘대외투자’과목 중 기업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통일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장기투자-주식투자’과목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상장 여부에 관계 없이 이 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피투자기업에 대해 實際控制權：지배권이 없는 주식을 구입한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기장하는 ‘원가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실제공제권이 있는 경우에는 피투자기업의 순자산이 증가 또는 감소할 때 투자회사의 투자수익 또는 투자손실로 증감시키는 ‘權益法：지분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권익법에 따른 회계처리는 종전과 현행이 동일하다(財政部農財司, 1993:18).

‘기타투자’과목은 종전 제도에서는 ‘대외투자’과목을 통하여 원가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피투자회사에 실제공제권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과목만 ‘기타투자’를 ‘장기투자-기타투자’로 변경시켜 원가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실제공제권이 있는 경우에는 권익법：지분법으로 주식의 경우와 같이 처리하면 된다.

(2) 應¹⁷收款：받을계정

기업의 받을계정항목에 대한 계산은 종전 제도에서는 일급 과목인 ‘應收款：미수금’과 목을 설치하고, 그 아래 ‘應收鎖貨款：외상매출금’, ‘應收單位借款：대여금’, ‘其他應收款：기타미수금’등의 이급 과목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기업업무와 관련있는 應收：미수, 暫付：가지급, 預付：선급된 金額을 구별하여 계산하였다.

현행 제도는 ‘應收帳款：외상매출금’, ‘壞帳準備：대손충당금’, ‘預付帳款：선급금’, ‘其他應收款：기타미수금’, ‘應收票據：받을어음’ 등의 다섯 개 과목이 설정되어 있었다. 신 구 제도를 비교하면 회계과목의 승급과 증가 이외에, ‘壞帳損失：대손상각’ 확정과 손실의 계산 방법에 차이가 있다. 종전의 제도에서는 ‘장기 체납되어 회수불능이 확실한 채권자산에 대하여, 향, 촌의 기업주부문에 보고하여 허가를 받고 동시에 재세부문의 동의를 얻은 후 ‘壞帳損失’을 계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壞帳損失’은 파산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파산재산이나 유산청산 후에 회수할 수 없는 ‘應收帳款’ 또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기간이 3년 초과하였거나 회수가 불가능한 ‘應收帳款’을 ‘壞帳：대손’이라 한다. 그리고 계산방법에서 종전 제도는 전부 직접법으로 처리하여야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직접법을 계속 채용할 수도 있고, 연말 채권자산에 일정비율을 ‘壞帳準備：대손충당금’을 계산하는 備低法：간접법을 채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관리비용으로 분류한다(財政部農財司, 1993:23-24), (王慶玲, 1993:82).

(3) 存貨：재고자산

存貨：재고자산은 향진기업이 판매하기 위하여 생산과정에 있는 모든 자산으로서 미착, 수증 또는 가공중인 각종의 원재료, 연료, 포장물, 소모품, 재공품, 상품, 반제품, 제품, 적송품 등이다. 그리고 이것은 향진기업의 자산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들의 수량과 가치를 명확히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王慶玲, 1993:92).

종래 제도에서는 기업의 각종 재료에 대한 계산을 ‘재료’계정만을 설정하여 처리하였다. 實際成本：실제원가를 사용하는 기업은 1급과목내에 ‘在途材料：미착재료’, ‘庫存材料：창고재료’, ‘위탁가공재료’ 등 3개의 2급과목을 설정하였다. 계획가격을 사용하는 기업은 ‘在途材料：미착재료’을 ‘材料采購：구입재료’과목으로 과목이름을 개명하고, ‘材料成本差異：재료원가차이계정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17 중국에서 ‘應’의 의미는 should, ought to로서 ‘당연히 해야할 권리와 의무’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應收款’은 ‘마땅이 받아야 할 돈(금액, 채권)’으로 ‘應收’은 ‘받아야 할’ 즉 우리나라의 계정과목 ‘未受：미수’가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應收款’, ‘應收帳款’, ‘應收票據’는 우리나라에서는 ‘미수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에 해당된다. ‘應付’와 ‘應交’은 ‘당연히 지급해야 할’와 ‘당연히 상급기관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표시하므로 우리나라의 계정과목 ‘未支給：미지급’과 ‘未納：미납’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應付票據’, ‘應付帳款’은 우리나라에서는 계정과목 ‘지급어음’, ‘외상매입금’에 해당하며, ‘應付工資’은 지급‘한’ 임금과 지급‘해야 할’ 임금도 처리하는 임금에 대한 통제계정으로서 ‘미지급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북한의 합영기업에서는 ‘지급임금’과목으로 처리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의 각종 재료에 대한 계산을 ‘구입재료’, ‘원재료’, ‘포장물(王慶玲, 1993:108-110)’, ‘低值易耗品: 소모품(王慶玲, 1993:104-107)’, ‘위탁가공재료(王慶玲, 1993:110-112)’, ‘재료원가차이’ 등의 6개 과목을 설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리고 동시에 실제 원가로 재료를 계산하는 기업은 ‘매입재료’, ‘재료원가차이’를 설정하지 않는 대신에 ‘미착재료’과목을 종설하고, ‘포장물’, ‘소모품’의 발생이 적은 기업은 ‘원재료’과목에서 처리한다. 계획가격으로 계산하는 기업에서는 ‘재료원가차이’과목을 설정하지 않는 대신 ‘원재료’, ‘포장물’, ‘소모품’과목 내에 ‘원가차이’명세과목을 설정하거나 ‘원재료’과목 내에 ‘창고재료’와 ‘원가차이’ 2개 2급과목을 설정한다. 종전 제도의 ‘自產留用糧食’과목은 현행 제도에서는 ‘農用材料’, 또는 ‘원재료’으로 처리되고 있다(財政部農財司, 1993: 26).

종전제도와 같이 현행제도에서도 제품에 대해선 ‘產成品: 제품’과목을 설정하고 각종의 제품의 실제 원가를 계산한다.

생산을 완료하고 검사를 마친 후 입고한 때

(차) 產成品	(대) 生產成本
---------	----------

월말 마감하고 당월 판매제품원가를 전기할 때

(차) 產品銷售成本	(대) 產成品
------------	---------

분기별 수금을 조건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제품 적송시

(차) 分期收款發出商品	(대) 產成品
--------------	---------

종전 제도에서는 ‘發出商品: 적송상품’과목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은행결제제도의 개혁에 따라 기업상황도 변하게 되었다. 현행 제도에서는 노동력 제공과 동시에 대금을 회수하였거나 이에 대한 증빙을 갖게 되었을 때 영업수입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현행제도에서는 ‘發出商品’과목의 설정이 필요 없다.

기말 재고조사시 제품이 남으면

(차) 產成品	(대) 待處理財產損溢
---------	-------------

만약 부족하면

(차) 待處理財產損溢	(대) 產成品
-------------	---------

그리고 계획원가계산을 할 경우에는 ‘產品成本差異: 제품원가차이’과목을 설정하여 실제 원가와 계획원가의 차이를 처리한다.

(4) 고정자산

현행 제도에서 고정자산에 관련된 회계과목으로는 ‘고정자산’, ‘累計折舊: 감가충당금’, ‘固定資產清理: 고정자산처분’, ‘在建工程: 건설가계정’ 등의 4가지가 있다(王慶玲, 1993: 138-139).

종전 제도에 설정된 회계과목과 비교하면 중감기장법을 채용하는 기업에서는 ‘固定資產清理: 고정자산처분’과목이 설정되지 않지만, 대차기장법을 채용한 기업에서는 ‘고정자산’과목내에 세목으로서의 2급 과목인 ‘固定資產清理: 고정자산처분’과목에서 처리한다. 그리고 ‘固定資產清理: 고정자산처분’과목의 계산범위에서도 차이가 있다. 고정자산에서

발생하는 훼손은 종전 제도에서는 ‘待處理財產損失-待處理固定資產損失: 고정자산처분손실’과목에서 처리하나, 현행 제도에서는 ‘固定資產清理: 고정자산처분’과목에서 처리한다. 과목의 명칭은 다르나, 계산범위에서는 종전 제도의 ‘折舊: 감가상각비’와 현행 제도의 ‘累計折舊: 감가총당금’이 일치한다.

‘固定資產購建支出: 고정자산자본적지출’과목은 ‘在建工程: 건설가계정’과목으로 대체되지만 그 계산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사용하지 않는 설비장치를 구입하였을 때, 종전 제도에서는 ‘固定資產購建支出: 고정자산자본적지출’과목에서 처리하였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在建工程: 건설가계정’과목에서 처리하지 않고 ‘고정자산’과목에 직접 처리한다.

이 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신구 재무회계제도의 차이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財政部農財司, 1993:19). 첫째, ‘고정자산’과 ‘소모품’의 구분 기준이 변동되었다. 종래의 제도에서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동시에 단위가치가 200위엔, 500위엔 혹은 800위엔 이상의 고정자산이어야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의 주요 노동자료부분에서 사용년한이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단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주요생산설비가 아닌 물품에 대해서는 단위가치가 2,000위엔 이상일 때에는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그 이하 일 때에는 소모품으로 처리한다.

둘째, 고정자산발생손익의 처리이다. 전 제도에서는 고정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과 처분순수입은 ‘전용기금-발전기금’과목에서 처리하고, 발생손실과 처분순손실은 기업의 발전기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고정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해서는 ‘영업외지출’ 또는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5) 待扣費用: 선급비용과 遷延資產: 이연자산

발생하여 기업이 이미 지급한 비용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이 됨으로써, 각 기의 제품, 노무 또는 서비스의 공동원가를 이후 기간에 분리하여 각 항의 비용과목을 계산한다. 이에 대해서 종전 제도에서는 ‘待扣費用: 선급비용’을 설정하고, 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완전히 소멸되지만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비교적 많을 때의 선급된 비용은 2년에 걸쳐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待扣費用’과 ‘遷延資產: 이연자산’ 2개의 과목을 설정하여 분담기간의 장단에 따라 1년 이내는 ‘待扣費用’으로, 1년 이상일 때는 ‘遷延資產’으로 처리한다.

‘待扣費用’은 기업이 이미 지출한 비용으로 1년 이내에 분담시켜야 하는 각 비용으로서 소모품, 선급보험료, 고정자산수리비용 등이 여기에 속한다. ‘遷延資產’은 기업에서 발생한 비용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부담시킬 수 없는 비용으로, 기업개업비, 고정자산대수리비, 임차자산개량지출 및 향진기업의 건물, 의각도로, 교량, 전력공급설비, 동력 등의 기초설비에 대한 지출을 들 수 있다(財政部農財司, 1993:26).

2. 부채회계

(1) 應付款: 미지급금과 應交款: 미납금

1) 應付款: 미지급금계정

기업이 지급해야만 하는 채무인 '應付款: 미지급금'에 대하여 종전의 제도에서는 한 개의 '미지급금'과목을 설정하고, 이 과목내에 '應付購貨款: 외상매입금', '應付投資分利款: 미지급투자', '其他應付款: 기타 미지급금' 등 3개의 2급과목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종전 제도의 '應付款: 미지급금'과목을 '應付帳款: 외상매입금', '預收帳款: 선수금', '應付利潤: 미처분이익', '應付票据: 지급어음', '其他應付款: 기타미지급금', '長期應付款: 장기미지급금' 등 6개의 과목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應付福利費: 미지급복리비는 應付工資: 미지급임금에서 처리된다(財政部農財司, 1993:32-33).

2) 應交款: 미납금

위의 '付'는 대등한 관계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를 나타내지만, '交'는 상급기관에 지급해야 할 의무를 표시한다. 따라서 종전의 제도에서는 기업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급기관에 납부해야하는 기업의 채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 개의 '應交款: 미납금'과목을 설정하고 그 내에 '應交稅金미납세금', '應交利潤: 미납이윤', '應交管理費: 미납관리비', '應交扶助基金: 미납부조기금', '應交教育基金: 미납교육기금', '其他應交款: 기타미납금' 등 6개의 2급과목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상급기관에 납부해야하는 기업의 채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4개의 '應交稅金', '應交管理費', '應交鄉村金', '其他應交款'과목 등을 설정하였다(財政部農財司, 1993:33-34). '應交稅金', '應交管理費', '應交鄉村金', '其他應交款'과목의 회계처리는 비용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3) 預提費用: 미지급비용

기업에서 이미 발생하거나 실제로 소모되었기 때문에 생산원가로서 기간비용에 계산되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비용과목이다. 잔액은 대변에 발생한다. 종전 제도와 현행제도의 회계처리는 모두 동일하다. 세금, 보험료, 차입이자, 고정자산수리비 등과 같이 지급되지는 않았으나 기간비용으로 계산되는 비용이다(王慶玲, 1993:199-203).

(2) 成本工資制度: 원가임금제도

중국의 향진기업은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의 혜택을 받아 왔다. 그 중 기타 소유제기업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국가가 재무정책시에 향진기업이 成本工資制度: 원가임금제도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향진기업의 세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경감하게 했다. 성본공자제도는 향진기업이 임금을 계산할 때에 해당지역의 실제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유관기관이 규정한 임금표준을 제품원가로 계산하는 제도이다. 향진기업의 직공임금수준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향진기업이 이러한 원가임금제도를 실시한다면 上交所得稅: 납부소득세에서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된다(財政部農財司, 1993: 7).

중국의 중서부와 동부의 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지역의 향진기업은 이제 막 발전을 시

작하게 되었다. 이들 지역의 향진기업의 발전은 풍부하고 임금이 저렴한 노동력의 이용이 필수적이다. 국무원은 이를 관찰하기 위하여 《중서부 향진기업의 발전가속화를 위한 결정》¹⁸이라는 문건을 발표하였다. 이 문건에서 ‘모든 유관기관은 향진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조처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하는 정신에 따라 업종별 기업재무제도를 보충할 때 成本工資制度: 원가임금제도를 제정하였다. 이 원가임금제도는 ‘향진기업직공의 평균임금이 해당지역 통계부문이 통계를 낸 국유기업직공의 평균임금보다 적은 기업은 원가임금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원가임금표준은 당해년도 국영기업 직공의 평균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실제지급임금과 원가임금표준과의 차이는 盈余公積金: 이익잉여금에 전입시킨다.’ 이러한 원가임금제도는 종래의 향진기업재무제도에서 규정된 원가임금제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財政部農財司, 1993:8).

첫째, 향진기업은 지방의 구체적 상황을 바탕으로 원가임금제도를 다시 재정하거나 실시하지 않고, 향진기업의 직공평균임금은 국유기업의 표준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둘째, 원가임금의 표준은 지방의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다시 정할 수 없다. 그리고 통계부문 통계지역의 전년도 국유기업직공의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년초에 정하고 년도 내에는 변동하지 않는다. 향진기업이 부분적으로 원가임금제도를 실시함으로서 향진기업과 국유기업간의 세수부담에 균형을 이루게 하고, 소유기업들간에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하게 함으로서 향진기업의 내부유보의 중대를 통하여 생산력을 증대시킨다.

원가임금제도를 수행하는 향진기업은 임금의 지급, 원가임금의 배분, 원가임금과 실제 발생임금과의 차액 등은 ‘應付工資: 미지급임금’과목에서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계산할 때는 원가임금제도를 실시하는 향진기업과 원가임금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향진기업과는 여러 면에서 동일하게 계산된다.

실제임금지급시 : (차) 應付工資 (대) 현 금

應付工資에 여러 종류의 차감항목이 있을 때 : (차) 應付工資 (대) 其他應收款
其他應付款

규정기간 내에 임금을 받지 못한 직공이 있는 경우, 임금을 발생시킨 부서에서는 반드시 재무회계부문에 임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임금반환시 : (차) 현 금 (대) 其他應付款

월말이 되어 규정된 원가임금을 임금비용으로 배분할 때, 분개는 다음과 같다. 단, 원가임금제도를 실시하는 향진기업은 규정된 원가임금표준액을 임금비용으로 계산하지만, 원가임금제도를 실시하지 않는 향진기업에서는 당월에 발생한 임금을 임금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이 다르다.

(차) 生產成本: 재조원가 (대) 應付工資

製造費用

管理費用

18 《關於加快發展中西部地區鄉鎮企業的決定》.

在建工程:재공품

應付福利費

원가임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향진기업에서는 원가임금표준을 임금비용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應付工資’과목은 대변에 잔액이 발생하게 된다. 이 금액은 실제 지급한 임금이 배분한 원가임금보다 적기 때문에 발생한 차액이며, 이 차액은 국가가 향진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려는 정책적 배려에서 나타난 것이며, 또 기업소유자의 권리으로 나타나게 된다.

연말 대변잔액을 盈余公積金: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여야 할 때 :

(차) 應付工資

(대) 盈余公積金

(3) 長期負債:장기부채

기업의 차입금항목에 대한 계산은 종전의 제도에서는 ‘銀行借款:은행차입금’, ‘其他借款:기타차입금’ 등 2개의 1급과목을 설정하여 처리하였다. ‘은행차입금’과목에는 은행의 차관 종류에 따라 ‘設備借款:설비차입금’, ‘生產費借款:생산비차입금’ 2개의 2급과목이 설정될 수 있으며, ‘기타차입금’에는 ‘財政周轉金:재정회전금’, ‘主管部門周轉金:주관부문회전금’, ‘其他單位借款:기타단위차입금’, ‘個人借款:개인차입금’ 등 4개의 2급과목이 설정될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의 차입금항목에 대해서는 차입기간과 차입방식에 따라 ‘단기차입금’, ‘장기차입금’, ‘應付債券:사채’ 등의 과목으로 분류하여 처리하고 있다 (財政部農財司, 1993:31), (王慶玲, 1993:206).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의 구분기준이 차입기간으로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년 이내이면 단기차입금의 범위에 포함되고, 1년 이상이면 장기차입금으로 분류된다. 이 2개의 과목은 차입처와 개인별로 명세장을 설치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應付債券:사채’는 기업이 발행한 1년 이상의 장기차입채권이다. 그러나 상환기간이 1년 이내이면 ‘應付短期債券:단기지급사채’로 분류된다.

3. 所有者權益

(1) 소유자권익과 전용기금, 투자기금

소유자권익은 약칭으로 ‘產權’이라하며, 자본주의국가의 회계학에서는 ‘資本’이라한다 (王慶玲, 1993:230). 현행 회계제도에서의 소유자권익은 기업투자자의 기업 순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한다. 소유자권익의 회계과목은 資本類, 公積類:잉여금류와 未分配利潤類:미처분이익류로 나누어진다. 資本類 회계과목은 ‘實收資本:납입자본’과목을, 公積類:잉여금류 회계과목은 ‘資本公積:자본잉여금’과 ‘盈余公積:이익잉여금’과목을 포함하고 있다. 未分配利潤類 회계과목은 ‘本年利潤:당기이익’과목과 ‘利潤分配:이익처분’과목으로 되어있다(財政部農財司, 1993:28).

종전의 제도에서는 자금의 관리 및 계산을 자금의 원천과 운용이라는 두 종류로 구분하여 전통적인 형태를 취하고, 투자자가 투자한 자금과 기업이 내부에서 형성한 적립

금의 계산을 ‘投資基金’과목 하나를 설정하고, 이 과목내에 ‘鄉投資基金’, ‘村投資基金’, ‘全民單位投資基金’, ‘外來集體單位投資基金’, ‘個人投資基金’, ‘國家扶持基金’, ‘企業積累基金’ 등 7개의 과목이 설정되어 있다.

기업의 특정자금에 대한 원천과 지정된 전문용도의 금액계산에 대해서는 ‘專用基金’과목을 설정하고 이 과목내에 ‘발전기금’, ‘복리기금’, ‘장려기금’, ‘기업기금’, ‘교육기금’, ‘대수리기금’ 등 6개의 2급과목을 설정하였다. 이와같이 종전의 제도는 개혁이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제약이 많았다.

현행 제도의 개혁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자본유지의 원칙, 소유자와 채권자의 합법적 권리의 보호, 자본금제도의 확립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행 회계제도에서는 ‘전용기금제도’를 폐지하고, ‘實收資本’, ‘資本公積’, ‘盈余公積’과목 등을 설정함으로써 소유자권익을 반영하였다. 종전의 전용기금중 ‘發展基金’, ‘企業基金’은 주요 원천이 기업이 가득한 기업이윤 중에서 계산되기 때문에 발전기금과 기업기금 등 2개 항목은 소유자권익의 일부분에 속한다. 종전의 제도에서는 발전기금을 기업의 권리기구의 비준을 받아 ‘投資基金-企業積累基金’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 기금은 기업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 사용하여야 하고, 남은 기금은 수익적 지출로 사용할 수 있었다.

전용기금의 다른 일부분인 ‘福利基金’, ‘獎勵基金’, ‘教育基金’ 등 3항은 노동자의 권리이다. 나머지 기금은 기업이 생산회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일종의 채무로 볼 수 있다(財政部農財司, 1993:28-29).

(2) 단독 향촌집체자본금의 설정

《기업재무통칙》과 입종별 기업재무제도는 자본금을 투자주체별로 국가자본금, 법인자본금, 개인자본금 그리고 외국인투자자본금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향진투자가 대부분인 집체기업에 대해서는 그 투자를 투자주체별로 국가자본금, 법인자본금, 개인자본금 중의 하나로 분류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재정부의 재무규정에 따르면 향진기업의 수집자본금을 ‘鄉村集體資本金’과목으로 단독으로 설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향촌집체자본금은 향 또는 진의 농민부문이나 조직이 대표권을 가지기 위하여 향 또는 촌의 집체자산을 자본금으로 투입한 것이다. ‘향촌집체자본금’과 ‘기타자본금’으로 투입된 향촌기업은 이윤분배시에 투입자금의 비례로 이윤을 분배하여야 하고 투자는 투자비율에 따라 이익분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향촌집체자본금’과목의 설정함으로써 각 개별 향진기업이 ‘實收資本’과목 내에 ‘鄉鎮集體資本金’이라는 명세과목을 설정하면 관리적 요구는 충족될 수 있다. 향촌기업의 향촌집체자본금의 총액을 유관부문의 해석에 따라 향진기업의 투자자본금으로 향촌집체자본금에 금액을 표시하면 된다(財政部農財司, 1993:7).

(3) 應彌補虧損: 미처리결손과 待處理財產損盈: 자산처분손익

종전 제도에서는 기업에서 발생한 미처리결손금을 처리하기 위하여 ‘應彌補虧損: 미처

리결손'과목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 따르면, 기업의 '應彌補虧損'은 기업의 부채도, 기업의 자산도 아니고, 이 과목은 다만 기업의 소유권자권익의 차감항목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행 제도에서는 '應彌補虧損'과목을 없애고, 기업에서 발생한 결손은 연말의 '本年利潤:당기이익'과목에서, '利潤分配·未分配利潤:미처분이익'명세과목으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이 때 차변잔액은 미처리결손금을 의미한다. 이 미처리결손금은 장래에 실현될 이익이나 기업의 盈余公積金:이익잉여금으로 보충하게 된다(財政部農財司, 1993:23).

기업의 미처리재산손익에 대하여 종전 제도에서는 '待處理財產損失:자산처분손실'과목과 '待處理財產盈余:자산처분이익'과목을 설정하였다. 손실과목내에서는 '待處理流動資產損失:유동자산처분손실'과 '待處理固定資產損失:고정자산처분손실'의 두 개 2급과목을 설정하고, 盈余과목 내에 '待處理流動資產盈余:유동자산처분이익'과 '待處理固定資產盈余:고정자산처분이익'의 두 개 2급과목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의 待處理財產에 대한 처리는 '待處理財產損盈:자산처분손익'만으로 처리하고 이 계정내에 '待處理固定資產損盈', '待處理流動資產損盈'의 2가지 2급과목을 설정한다. 이 과목의 차변잔액은 자산처분이익을 차감한 후 순손실을 의미하고, 대변잔액은 자산처분손실을 차감한 후의 자산처분순이익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형식적인 면에서 종전 제도와 현행 제도를 비교하여 볼 때, 단순히 회계과목이 합쳐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계산범위에서 볼 때 종전의 제도에서는 재료, 재공품, 제품 등의 유동자산의 처분으로 발생한 평가익, 평가손, 감보손 등과 고정자산처분으로 발생한 평가손익을 구별하고 있다. 계산범위에서 종전 제도와 현행제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고정자산에서 발생하는 훼손을 종전 제도에서는 '待處理財產損失-待處理固定資產損失'과목에서 처리하나, 현행 제도에서는 '固定資產清理'과목에서 처리한다는 점이 다르다(財政部農財司, 1993:22).

4. 비용과 수익회계

(1) 수익과 비용의 분류

종전 제도에서는 기업의 손익계산에 관련되는 회계과목으로 '鎮售:매출'과목의 대변에 '매출수입'을 기록하고, 차변은 '매출원가', '판매비', '판매세금'과 '上交管理費:납부관리비'를 기록하고, '투자수익'은 '利潤分配'과목에서 처리하고, '영업외수입'과 '영업외지출'에 대한 계산은 '이윤'과목에서 처리하였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의 손익관계과목으로 '產品銷售收入:제품매출수익', '產品銷售成本:제품매출원가', '產品銷售費用:제품매출비용', '產品銷售稅金及附加:제품매출세금및부가금', '기타업무수입', '기타업무지출', '관리비용', '재무비용', '투자수익', '영업외수입', '영업외지출' 등 11개의 과목을 설정하였다(財政部農財司, 1993:37), (王慶玲, 1993: 249-251).

(2) 生産費用:제조경비

종전의 제도에서는 '生産經營費用:제조경비'과목만을 설정하여,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산경영비용을 처리하였다. 이 과목 내에는 각종 제품의 제조원가를 계산하기 위하여 원가계산대상에 따라 명세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향진기업은 그 업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위하여 기업은 2급과목을 증설할 수 있다. 공업기업의 경우에는 '생산경영비용'과목 내에 '기초생산', '보조생산', '車間經費:제조경비', '기업관리비' 4개의 2급과목을 증설할 수 있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의 생산비용계산에 대하여 비용과목설정이 비교적 신축성이 있다. 기업규모의 대소, 생산조직의 상황, 제품의 종류, 가공의 정도에 따라 1개의 '생산비용'과목을 설정하거나, '生產成本:제조원가'와 '제조비용' 2개의 과목을 설정하거나, '기본생산', '보조생산', '제조비용' 3개과목을 설정할 수도 있다. 종전 제도와 현행 제도를 비교하면 과목설정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나, 각 과목의 명칭에 있어서는 종전 제도의 '車間經費'를 현재는 '제조비용'으로, 종전의 '생산경영비용'은 '생산비용'으로 명의만 개칭하였으나 그 계산내용은 같다. 그러나 개별제품원가에 포함된 범위에 있어서는 매우 다르다. 종전의 제품원가는 完全成本法:총원가법으로 계산하였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製造成本法:제조원가법으로 계산한다. 즉 현행제도에서는 개별제조원가가 과거의 직접비용과 제조비용의 합인 車間經費와 같고, 제품의 원가에는 기업관리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財政部農財司, 1993:36).

(3) 관리비용

관리비용은 생산활동을 조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의 행정관리부문에서 발생되는 비용이다. 公司經費:회사경비, 工會經費:노동조합비, 직공문체비, 行業保險費:업종보험비, 직공교육경비, 노동보험비, 董事會費:이사회회의비, 諮詢費:자문료, 소송비, 업무초대비, 場地使用費:토지사용비, 기술이전비, 무형자산소각, 연구개발비, 提取的壞帳準備金:대손충당금전입, 鄉鎮企業(上交上級主管部門)管理費:향진기업납부관리비 및 기타관리비등을 들 수 있다(財政部農財司, 1993:151), (王慶玲, 1993:274).

公司經費는 회사관리 직원들의 급료, 직공복리비, 差旅費:여비교통비, 판공비, 折舊費:감가상각비, 수리비, 物料消耗:소모품비, 기타의 회사경비등을 내용으로 한다.

1) 공회경비와 직공문체비의 계산

《기업재무통칙》을 근거로 제정된 업종별 기업재무제도의 관리비용에는 工會經費:노동조합비가 있다. 모든 기업은 직공의 임금 총액중 2%를 交給工會經費:납부노동조합경비로 계산하여야 한다. 상당수의 향진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를 위하여 재정부에서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향진기업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文體活動費:문화체육활동비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종래의 향진기업재무제도의 《규정》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규정에서의 계산표준과 종래의 향진기업재무제도규정에서 정한 매 1인당 월 0.5위엔의 표준과는 서로 다르다. 《규정》에서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향진기업은 직공의 임금 총액의 1%를 문화체육활동

비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향진기업의 문화체육활동비의 비율 1%는 기타 일반기업 직공의 임금 총액의 2%을 계산하는 노동조합회비의 비율보다 적다. 그러나 이 비용은 향진기업의 미설립노동조합을 위하여 상급노동조합에서 일정비율을 사용할 수 없다. 더욱이 계산된 문화체육활동비는 향진기업의 문화체육활동비로 사용하더라도, 직공의 工資:임금총액의 1%를 계산하는 것은 비교적 합리적이다. 기타 기업이 계산한 노동조합경비와 향진기업이 계산한 문화체육활동비는 모두 기업의 부채이며, 부채로 분류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한다(財政部農財司, 1993:12-13).

노동조합이 설립된 기타 기업은 계산된 노동조합경비를 노동조합에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其他應付款:기타 미지급금'과목으로 처리한다. 향진기업이 계산한 문화체육활동비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應付福利費:미지급복리비'로 처리한다.

향진기업 문화체육활동비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계산할 때 : (차) 관리비용 (대) 應付福利費

사용할 때 : (차) 應付福利費 (대) 현금 은행예금

2) 上交鄉村款:미납향촌금

향진기업은 농업과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농촌경제의 진흥과 농민 생활수준의 제고,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을 위하여 향진기업의 발전이 중대한 역할을하게 된다. 1985년 국무원이 제정한 《농촌농촌경제활성화를 위한 10개항정책에 관하여》¹⁹의 문건에서 향진기업은 사회성지출비용으로 세차감전 이윤의 10%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종전의 제도는 지출방법과 이러한 비용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993년 재정부에서 제정한 《통칙》, 《준칙》 그리고 《규정》을 종전 제도와 비교하면 재무관리와 회계처리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財政部農財司, 1993:13).

종전 제도에서는 향진기업의 사회성지출비용보조를 처리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세금을 먼저 지출하고, 후에 上交鄉村款:미납향촌금을 계산하는 법이고, 다른 하나의 방법은 사회성지출비용을 면세이윤으로 차감하여 세금을 지출한 후, 세차감 후이윤에서 미납향촌금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종전 제도는 종전 규정에 따라 2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1993년 재정부가 《규정》을 제정한 이후 재무규정은 통일되었다. 이 규정에서는 향진기업이 보조하는 '사회성지출비용'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財政部農財司, 1993:14).

① 기업이 <규정>에 따라 향, 촌에 납부해야 할 사회성 지출액을 부채로 분류된 과목인 '應交鄉村款:미납향촌금'과목에서 처리한다.

② 납부향촌사회적지출

기말계산시 : (차) 利潤分配·應交鄉村款 (대) 應交鄉村款

실제납부시 : (차) 應交鄉村款 (대) 은행예금

¹⁹ 國務院, 1985, 《關於進一步活農村經濟的十項政策》.

③ 본 과목의 대변잔액은 기업이 계산된 사회성 지출액을 표시한다.

(3) 향진기업관리비

향진기업의 신속한 발전에 따라 향진기업의 행정주관부문의 업무도 날로 증가하게 되어 향진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다 할 수 없게 되었다. 지방의 향진기업 행정주관부문의 정상적인 행정경비는 장기간동안 재정부문이 예산으로 지출을 할 수 있는 능력 범위를 초과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향진기업이 판매수입의 일정비율을 향진기업관리비로 계산하게 함으로써 행정주관부문의 경비지출을 해결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침을 실시함으로써 실제로는 향진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향진기업 행정주관부문의 경비지출을 부담하게 되었다(財政部農財司, 1993:9).

《관리비관리법》²⁰은 향, 진, 촌에서 사업하는 모든 향진기업중 공업기업, 상업기업, 건축장치기업, 교통운수기업, 음식서비스기업 등의 모든 기업이 향진기업행정주관부문의 交納鄉鎮企業管理費:남부향진기업관리비를 균등하게 계산한다. 그러나 농업기업은 남부 향진기업관리비를 계산하지 않는다. 그리고 農村個體工商戶:농촌개인기업도 향진기업관리비를 남부하지 않는다. 《관리비관리법》에 따르면 향진농업기업은 재정부가 제정 발표한 《향진기업<기업재무통칙>》의 집행과 업종별기업재무제도의 문제점 규정》에 따라 집행할 때도, 향진기업관리비를 당연히 남부하지 않는다.

향진기업은 판매수입(경영수입, 노무수입 포함)의 총액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비례하여 交納管理費:남부관리비로 계산한다. 여기서 계산할 구체적인 비율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재정, 물가, 향진기업주관부문이 협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향진기업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향진기업의 주관부문은 정상적 경비의 조달원천을 보증하는 동시에 계산비률을 점차 감소해 감으로써 향진기업의 부담이 감소되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향진기업이 서로 다른 업종의 경제효익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계산비율을 제정하기도 한다(財政部農財司, 1993:10).

향진기업이 중외합자 실시 후 향진기업의 주관부문이 합영기업주관부문으로 확정되면, 종래의 향진기업이 그 주관부문에 남부하던 관리비는 중국측이 계속하여 남부하여야 한다(財政部農財司, 1993:10-11).²¹

20 종래의 향진기업재무제도는 향진기업의 향진기업관리비남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1988년 농업부, 재정부에서 《鄉鎮企業管理費提取, 解交和管理辦法:향진기업관리비의 계산, 남부와 관리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법은 '3亂'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를 정리할 목적으로 1992년 국가물가국과 재정부는 '關於發布農業系統行政事業性收費項目和標準的通知:농업계 통행정사업의 수비항목과 표준에 관한 통지'라는 문건중에 《鄉鎮企業管理費管理辦法:이후 약하여 관리費管理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향진기업의 남부할 향진기업관리비, 남부방법, 각급 향진기업 행정주관부문사용비례, 향진기업관리비사용범위 등 문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관리비관리법》에 따라 각성, 자치구, 직할시의 물가와 재정부문은 이 법을 바탕으로 실시세칙의 제정과 국가 물가국, 재정부, 농업부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관리비관리법》의 실시로 그 이전에 발표된 향진기업관리비에 관한 규정은 일률적으로 그 집행이 정지되었다.

21 향진기업의 관리비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향진기업의 행정주관부문에 아직 편입되지 않은 인원의 경비지출보조, 향진기업의 교육훈련, 기술개발, 신제품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향진기업의 업무에 필요한 검사기기의 구입과 이에 유관되는 비용, 전람회와 견본비용의 부족에 대한 보조 등이다. 향진기업이 지출한 기업관리비용 중 자산성지출에 대해서는 모두 동급 행정부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리고 상급의 향진기업 행정관리부문에 보고하여 비준을 얻어야 한다. 각급 향진기업 행정주관부문은 은행에 전문과목을 개설하고 이에 대한 자금을 향진기업의 관리에만 사용하는 등의 향진기업 관리비용의 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매년 말에는 향진기업관리비용의 수지내용을 같은 급의 재정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향진기업관리비는 지방 각급 향진기업행정 주관부문이 각급 사용비율²²에 따라 사용한다(財政部農財司, 1993:11).

향진기업은 규정에 따라 향진기업관리비를 계산하여 기업의 부채의 항목으로 처리하고, 회계과목표의 부채류에 ‘應交管理費:미납관리비’과목을 증설한다. 본 과목은 기업이 규정에 따라 납부할 향진기업관리비를 계산한다.

기말계산시 : (차) 관리비용 (대) 應交管理費

실제납부시 : (차) 應交管理費 (대) 은행예금

본과목의 대변잔액은 기업이 계산된 향진기업관리비를 표시한다.

5. 利潤:이익과 利潤分配:이익처분

(1) 利潤:이익

종전 제도에서는 ‘利潤:이익’과목이 설정되어 있었거나 현행 제도에서는 ‘本年利潤:당기이익’으로 개명하였다. 이 두 과목은 모두 기업이 실현한 이익총액을 표시하는 것에 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서로 다른 점은 종전 제도의 ‘利潤’과목 내에는 ‘鎖售利潤:매출총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지출’등 3개의 2급과목을 설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영업외수익’, ‘영업외지출’ 등 2개의 과목을 2급과목에서는 제외시키고 1급과목에 단독으로 설정하였다. 현행 제도에서는 1급과목으로 ‘本年利潤’, ‘영업외수익’, ‘영업외지출’ 3개의 과목이 설정된다. 따라서 2급과목은 다시 설정할 필요가 없고, 매월 발생하는 손익에 해당하는 과목은 모두 ‘本年利潤’과목에서 처리한다. 이 과목에서 대차금액의 차액

$$\text{납부금액} = \text{합영기업 판매수입} \times \text{합영기업투자액} \text{ 중 향진기업지분율} \times \text{관리비 계산비율}$$

예를 들자면 향진기업과 외국기업의 합자된 향진기업총투자액은 인민폐 70만위엔이며, 이중 외국기업투자액이 인민폐 30만위엔인 경우에 당연히 합영기업의 판매수입은 300만위엔이고, 규정에 따른 향진기업관리비의 계산비율은 0.3%일 때, 향진기업이 납부해야 할 향진기업관리비는 다음과 같다. $300\text{만원} \times 7/10 \times 0.003 = 0.63\text{만원}$

²² 향과 현급 향진기업행정부관부문은 70%, 시급 향진기업행정주관부문은 20%, 성급 향진기업행정주관부문은 10%를 사용한다. 현과 성의 분할비율은 각 지역의 실제상황을 근거로 스스로 확정한다. 만약 향급 향진기업기업관리인원의 경비를 현급 향진기업행정부관부문에서 같이 지급한다면, 현급 향진기업 행정주관부문의 분할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은 당기에 실현된 손익을 반영하며, 차변잔액은 손실누적액을 반영하고, 대변잔액은 이익누적액을 반영한다. 이와같이 계산의 내용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단지 명칭상 변경이라 볼 수 있다(財政部農財司, 1993:164-165).

매월 이윤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帳結'과 '表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帳結'은 매월 손익관계과목을 마감하여 그 잔액을 '本年利潤'과목에 대체하는 방법이고 '表結'은 매월 장부마감시 손익관계과목의 잔액을 '本年利潤'과목에 대체하지 않고, 년말결산시에 손익관계과목의 누계잔액을 '本年利潤'과목에 대체하는 방법이다(財政部農財司, 1993:165).

이윤총액은 기업이 일정기간내에 실현된 손익총액을 나타내며,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의 최종재무성과를 나타낸다. 이윤총액은 매출이윤, 투자순수익, 순영업외수입과 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이윤총액} = \text{매출이윤} + \text{투자순수익} + \text{영업외수입} + \text{영업외지출}$$

이 식에서 매출이윤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text{매출이윤} = \text{제품매출이윤} + \text{기타매출이윤} + \text{관리비용} + \text{재무비용}$$

이 식에서 제품매출이윤 = 제품매출수입 + 제품매출원가 + 제품판매비 + 제품판매세금 및 부가금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제품판매세금 및 부가금은 매출제품에 부과된 產品稅: 물품세, 增值稅:부가가치세, 영업세, 省市維持建設稅:도시계획세 등이다. 그리고 기타매출이윤 = 기타판매수입 + 기타판매원가 + 기타판매세금과 부가금으로 계산되며, 기타판매세금 및 부가금은 기타매출업무에 부과된 產品稅, 增值稅, 영업세, 省市維持建設稅와 교육비부가 등이다(財政部農財司, 1993:166).

(2) 利潤分配:이익처분

1) 이익처분의 계산

현행 제도에서 기업이윤의 처분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지도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첫째, 기업의 이윤처분방법을 통일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기업에 대한 권한 관계를 표시한다. 둘째, 서로 다른 소유제와 경영방식으로 인한 기업이윤의 처분에 있어서 특징을 허용하고 국제적 관례에 따른다. 셋째, 기업의 자주권과 재무감독 및 방침을 고려한다.

이러한 지도사상 아래 기업의 이윤처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財政部農財司, 1993:167-168), (王慶玲, 1993:318-322).

① 稅差減前利潤處分

세전이윤분배항목에 있어서 종전제도는 그 내용이 많지만, 현행 제도는 기업이윤총액을 국가규정에 따라 조정한 후, 교납소득세법에 따라 관할지역에 제출하면 된다.

② 交納所得稅

소득세의 계산은 세무부문의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서를 통해서 계산한다. 기업이 이익총액과 납세소득액은 같지 않다. 교납소득세은 이익처분항목이다.

③ 稅差減後利益處分

기업의 세차감후이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처분한다.

ⓐ 교통증점건설기금, 예산조절기금 등 특종기금.

ⓑ 몰수재산손실, 각 항의 세수체납금과 벌금의 지급.

ⓒ 기업전기결손보충 · 결손기업발생결손을 1차년도세차감전이윤으로 보충할 수 있고, 1차년도 이윤으로 결손을 보충할 수 없을 때는 5년 내에 이연하여 보충 할 수 있다. 결손을 보충할 세차감후이윤이 없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보 충할 수 있다.

ⓓ 法定盈余公積金: 법정이익잉여금의 계산.

법정이익잉여금을 세차감후이윤에서 위에서 제시한 Ⓛ-ⓒ 까지의 3항목을 차 감한 후의 10%를 계산한다. 이익잉여금은 注冊資金: 등록자본의 50%까지 계산 할 수 있다.

ⓔ 公益金의 계산.

계산비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기업은 실제의 상황을 고려하여 분배 방안을 제출하여 기업의 권리기구의 비준을 얻은 후 계산한다.

ⓕ 투자자에 대한 이윤분배의 계산.

기업은 전기미처분이윤은 당기이익과 같이 투자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2) 주식회사의 특수규정

주식회사의 세차감후이익처분은 세차감후이윤에서 Ⓛ-ⓓ까지의 과목을 계산한 후 공 익금을 계산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산한다(財政部農財司, 1993:168).

① 우선주배당금.

② 임의적립금의 계산.

임의적립금의 계산과 사용은 기업의 정관(公司章程)이나 주주총회(股東會)의 결 의에 따른다.

③ 보통주배당금.

당기이윤이 없을 때는 배당을 할 수 없다. 결손전보후의 이익잉여금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 주식액면가액의 6%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익잉여금을 배당금으로 분배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당금분배후의 법정이익잉여금이 등록자금의 25%보다 적을 수 없다.

3) 이익처분의 회계처리

기업이윤의 처분은 '利潤分配'과목으로 처리한다. 종전 제도와 비교하면 과목명칭은 동 일하지만 계산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변하였다(財政部農財司, 1993:169).

첫째, 종전 제도에 있던 기업이익을 ① 稅前利潤分配, ② 上交和減免所得稅, ③ 稅后 利潤修正, ④ 稅后子利潤分配의 순서로 계산하던 2급과목은 없어졌다.

둘째, '利益分配'과목의 계산내용인 '투자이윤'은 세차감전내용이 아니라 세차감후내용

으로 ‘투자수익’과목에서 계산한다.

세계, '未分配利潤'제도를 채택하였다. 종전 제도에서는 연말 당기에 실현된 이윤을 모두 '利潤分配'과목으로 마감한 후, 당기말 당기이윤을 분배하기로 한 내용을 분배되지 않았거나 실제로 분배한 내용은 '미납(應交)' 또는 '미지급(應付)'과목으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이윤분배'과목은 잔액이 없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실제로는 '이윤분배'과목 내에 '미분배이윤'명세과목을 설정하여 처리한다.

‘利潤分配’과목의 계산내용은 다음과 같다.

‘利潤分配’과목 내에는 應交社會性開支款(미지급사회성지급금), 應交所得稅(미지급소득세), 產品銷售利潤(제품매출이익), 應交特種基金(미지급특종기금), 盈余公積補虧(이익잉여금보충), 提取盈余公積(이익잉여금), 提取承包獎勵(임원상여금), 應付利潤(미지급이익), 未分配利潤(미처분이익) 등의 명세과목을 설정한다.

이 윤처분의 내용을 회계처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년말 應交社會性開支款의 계산:

(四) 應交鄉村款

② 년말 應交所得稅의 계산:

(차) 利潤分配-應交所得稅 (대) 應交稅金

(四) 應交稅金

③ 교통중점건설기금과 예산조정기금의 계산:

(차) 利潤分配-應交特種基金 (대) 其他應交款

④ 欠金公積彌補廳捐: 경수부 충이의의연금의 사용.

(차) 盈余公積 (대) 利潤分配-盈余公積補額

⑤盈余公積金·이익잉여금 계산·

(차) 利潤分配-提取盈金公積 (대) 盈金公積

⑥ 념막 틀자자이율의 계산·

(左) 利潤分配-應付利潤 (右) 應付利潤

⑦ 념말 담기식 혼이용의 ‘利害’

(左) 本年利潤 (右) 利潤分配

⑧ 념만 기타면세과목의 장애인 ‘未分配利潤’과목

(二) 欠款品項清單 (三) 欠款原因
應收特種

應付利潤
提取盈余公

명세과목 :

(차) 盈余公積補虧 (대) '未分配利潤'명세과목

6. 회계보고

(1) 재무보고체계의 개혁

종전의 재무보고체계는 계획경제 아래 만들어진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첫째, 회계보고는 단지 정부부문의 수요만 만족시켰을 뿐 투자자의 요구와 기업관리 목적은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둘째, 회계보고는 국제적 관례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있으며 대외개방에서 이 차이는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재무보고체계에 다음과 같이 비교적 큰 변화를 가져왔다.(王慶玲, 1993:324)

첫째, 자금평형표를 자산부채표로 변경하고, 資金占用=資金來源:자금원천의 평형공식을 국제적 관례에 맞게 자산=부채+소유자권익의 평형공식으로 변경하였다.

둘째, 재무성과제산방법을 변경하고 이윤표를 손익표로 변경하였다.

세째, 재무상황변동표를 추가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네째, 대외보고용의 원가보고서는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어졌다.

(2) 재무보고의 종류와 특징

현행 회계제도에 따르면 향진기업계통의 재무보고내용은 ① 자산부채표(財政部農財司, 1993:187-197), ② 손익표(財政部農財司, 1993:197-200), ③ 재무상황변동표(財政部農財司, 1993:201-208), ④ 이윤분배표(財政部農財司, 1993:208-211), ⑤ 향진기업재무평가지표표(厲以寧, 1993:120-124)²³ 등이다. 이를 재무보고서 양식은 한국의 재무제표 양식과 기본적인 틀에서는 동일하지만 구체적인 계정과목의 회계처리 내용에서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향진기업 회계보고서는 향진기업이 하나의 특수한 기업형태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王慶玲, 1993:326)

- ① 회계보고서는 한 개의 기업형태이면서도 여러 종류의 업종 중 하나의 업종이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소유형태 중 하나의 소유형태를 취하고, 여러 종류의 경영형식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② 회계보고서는 당과 국가가 향진기업에 대한 방침과 정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③ 회계보고서는 각급 정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회계보고서는 기업의 각 편제와 각급 주관부문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²³ 다음 회계보고서에 대한 양식, 회계과목의 편제과 작성내용에 대해선 팔호속의 참고서적을 참조할 것. ① 자산부채표(王慶玲, 1993:327-340), ② 손익표(王慶玲, 1993:341-347), ③ 재무상황변동표(王慶玲, 1993:347-356), ④ 이윤분배표(王慶玲, 1993:356-361), ⑤ 향진기업재무평가지표표(王慶玲, 1993:376-386).

이와같은 이유 때문에 향진기업은 업종별 기업재무회계제도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종별 향진기업을 종합하여 통일적으로 재무보고양식을 규정하고 있다[부록 자료2 참조].

V. 총괄과 요약

향진기업의 회계제도는 1980년 《농촌인민공사회계제도》를 제정 공포한 인민공사회계시기의 회계제도, 1986년 《향진기업재무제도》, 《향진기업회계제도》 그리고 《향진기업원가지출범위에 관한 규정》등의 규정에 따른 제도, 그리고 1993년 7월 1일을 기해 1986년도 규정들의 집행을 정지하고, 《기업재무통칙》과 《기업회계준칙》을 근거로 하여, 업종별 향진기업의 재무회계제도를 집행하기 위해서 1993년 4월 15일 공포한 《향진기업의 업종별 기업재무회계제도집행에 관한 약간의 문제점 통지》를 근거로 발표한 《향진기업〈기업재무통칙〉의 집행과 업종별기업재무제도의 문제점 규정》과 《향진기업〈기업회계준칙〉의 집행과 업종별기업회계제도의 문제점의 규정》등의 규정에 따른 현행 회계제도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 3단계인 현행 향진기업의 재무회계제도에 있어서 회계처리상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향진기업의 주관재정기관은 재정부문이다. 국가유관기관의 정책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향진기업은 관리비용중에서 납부향진기업관리비를 계산하여야 한다(6조). 그리고 당중앙과 국무원의 유관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향진기업은 납부소득세지급 전에, 향, 촌 납부후의 이윤 10%를 사회성 지출비용으로 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8조).

이러한 향진기업관리비와 사회성지출비용을 처리하기 위하여 ‘應交管理費:미납관리비’와 ‘應交鄉村金:미납향촌금’ 2개의 계정과목을 추가로 설정하여 처리하고 있다.

향진기업의 실제상황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향진기업의 출자자본금중 향촌집체자본금의 단독출자를 인정하고(3조), 향진기업이 경영책임제를 실시한 후에 발생할 집체소유제를 개체소유제로의 변경, 주식화한 집체자산의 개인에 대한 분배는 결손전보후의 이익잉여금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 주식액면가액의 6%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익잉여금을 배당금으로 분배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당금 분배 후 법정이익잉여금이 등록자본의 25%보다 낮을 수 없다.

둘째, 향진기업소득세납부 후의 이윤은 기업재무제도의 규정된 순서에 따라 분배한 후 공익금공제후 ‘계약배당금’항을 추가할 수 있다. 계약인은 계약규정의 지표를 완성한 후, 향진기업은 계약규정에 따라 세차감후이윤 중 계약인에게 계약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향진기업이 계약규정에 따라 세차감후이윤 중에서 계약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때 ‘미지급이익(應付利潤)’과목에서 처리한다.

세째, 중서부와 동부지역 등 경제가 발달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향진기업의 직공평균임금이 국유기업의 직공평균임금보다 낮을 때는 원가임금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가임금표준도 확정하여야 한다. 원가임금제도를 수행하는 향진기업은 임금의 지급,

원가임금의 배분, 원가임금과 실제발생임금과의 차액 등은 ‘應付工資：미지급임금’과 복에서 계산한다. 그리고 모든 기업은 직공의 임금총액 중 2%를 ‘交給工會經費：납부조합경비’로 계산하여야 하나,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향진기업에 대해서는 ‘문체활동비’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향진기업은 업종별 기업재무제도의 규정을 근거로 하며, 각 지구, 각 부문의 향진기업재무에 관한 보충규정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기업의 주식제 개혁은 1992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재무회계, 재무관리와 감사 방면의 문건 등을 포함한 한 계열의 많은 법 규들을 국무원의 유관기관이 제정 공포를 완료하였다. 이러한 한 계열의 규정과 제도들이 주식제기업에 대한 회계업무의 규범을 이루고, 나아가 향진기업의 주식제도개혁 중 재무회계업무에 대한 변화의 바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향진기업의 주식제도의 개혁에 따른 재무회계제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최상문

1992 “집단소유 생산공동체의 회계제도(I)”, 윤종안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서울:편집 위원회.

安福仁 (An, Fu Ren)

1992 『城鎮集體企業財務管理』, 北京:北財經大學出版社.

蔡根女, 李衛武 (Cai Gen Nu 等)

1993 『鄉鎮企業管理諮詢』, 北京:農業出版社.

沈益康, 先澤, 趙人朋烏馬國柱 (Chen, Yi Kang 等)

1986 『鄉鎮企業經營管理』, 北京:經濟管理出版社.

除昌渠 (Chu, Chang Qu)

1993 『鄉鎮工業企業會計習題集』, 北京:中國農業科技出版社.

鄧伯銑 (Deng, Bai Xi)

1992 『鄉鎮企業與情報』, 北京:科學技術文獻出版社.

丁國光 (Ding, Guo Guang)

1993 『鄉鎮企業論』, 北京:中國財政經濟出版社.

干慶坦, 周振洲, 蔡遂 (Gan, Qing Tan)

1991 『鄉鎮企業會計』, 四川:四川教育出版社.

干慶坦, 刻子牛, 王宇慶, 幹千里 (Gan, Qing Tan)

1993 『新編農業企業會計』, 成都:西南財政大學出版社.

干玉林 (Gan, Yu Lin)

1992 『鄉鎮企業財務會計實用大全』, 沈陽:遼寧人民出版社.

干玉林 (Gan, Yu Lin)

1991 『會計法規知識大全』, 沈陽:遼寧人民出版社.

郭恩吉 (Guo, En Ji)

1993 『鄉鎮企業實用寫作指導』, 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

郭康年, 羅易維 (Guo, Kang Nian)

1993 『鄉鎮工業企業會計』, 北京:中國農業科技出版社.

黎文珠 (Li, Wen Zhu)

1993 『鄉鎮企業財務會計』, 北京:氣象出版社.

厲以寧 (Li, Yi Ning)

1993 『鄉鎮企業股份制 - 組建與運行』, 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

孫尚清 (Sun, Shang Qing)

1993 『跨出國門的中國鄉鎮企業』, 北京:中國發展出版社.

王慶玲 (Wang, Qing Ling)

1993 『新編 鄉鎮企業會計』, 北京:中國國際廣播出版社.

吳敬瑗 (Wu, Jing Yuan)

1987 『鄉鎮工業企業會計』, 北京:中國農業科技出版社.

楊樹枝 (Yang, Shu Qi)

1990 『會計大辭庫』, Vol.2., 北京:黑龍江朝鮮民族出版社.

張福輝 (Zhang, Fu Chi)

1988 『鄉鎮企業經營管理學』, 河南:河南大學出版社.

張雪年等 (Zhang Xue Nian Deng)

1990 『鄉鎮行政管理』, 北京:經濟科學出版社.

鄒漢清等 (Zou Han Qing Deng)

1990 『鄉鎮經濟管理概論』, 北京:經濟科學出版社.

本書編寫組

1989 『鄉長手冊』, 北京:法律出版社.

財政部農財司

1993 『鄉鎮企業會計知識實用問答』, 北京:農村讀物出版社.

浙江省鄉鎮企業局

1985 『鄉鎮企業會計教材』, 浙江:浙江人民出版社.

中國新技術創業投資公司

1988 『鄉鎮企業經營管理』, 北京:科學技術文獻出版社.

成都市教材委員會

1992 『鄉鎮企業會計』, 北京:高等教育出版社.

國家統計局

1994 『中國統計摘要』, 北京:中國統計出版社.

부 록

자료 1. 현행제도의 회계과목

流動資產 liudong zichan(리우뚱 쯔초안):	유동자산
貨幣資金 huobi zijin(후아이진 씨진):	화폐자산
101 現金 xianjin(시엔진):	현금
102 銀行存款 yinhang cunkuan(인행 춘쿠안):	은행예금
109 其他貨幣資金 qita huobi zijin(치타 후아이진 씨진):	기타화폐자금
短期投資	
111 短期投資 duanqi touzi(뚜안치 터우쓰):	유가증권
112 應收票據 yingshou piaoju(잉서우 파오쥐):	받을어음
113 應收帳款 yingshou zhangkuan(잉서우 장쿠안):	외상매출금
114 壓帳準備 huizhang zhunbei(화이장 준뻬이):	대손충당금
115 預付帳款 yufu zhangkuan(위후우 장쿠안):	선급금
119 其他應收款 qita yingshou kuan(치타 잉서우 쿠안):	기타미수금
存貨 cunhuo(춘후어):	
121 材料采購 cailiao caigou(차이라오 차이꺼우):	매입재료
123 原材料 yuan cailiao(위안 차이라오):	원재료
128 包裝物 bao zhuang wu(빠오 주앙 우):	포장물
129 低值易耗品 di zhi yi hao pin(띠 즈 이 하오 핀):	소모품
131 材料成本差異 cailiao chengben chayi(차이라오 초영뺀 초아이):	재료원가차이
133 委託加工材料 weituo jiagong cailiao(웨이투어 지아꽁 차이라오):	위탁가공재료
135 自製半成品 zizhibancheng pin(쯔즈뺀초엉 핀):	자가반제품
137 產成品 chanchengpin(초안초엉핀):	제품
138 分期收款發出商品 fenqishoukuuanfachushangpin(흰치서우쿠안화츠우상핀):	직송상품
139 待扣費用 daikou feiyong(따이커우 훼이용):	선급비용
長期資產	
changqi zichan(츠앙치 쯔초안):	장기자산
151 長期投資 changqi touzi(츠앙치 터우쓰):	투자유가증권
固定資產	
161 固定資產成本 guding zichan(꾸멍 쯔초안):	고정자산
165 累計折舊 guding zichan chengben(꾸멍 쯔초안 초영뺀):	고정자산원가
166 固定資產清理 lei ji zhe jiu(레이 지 저 지우):	감가충당금
	처분고정자산

169 在建工程 zaijian gongcheng(짜이지엔 꽁초영): 건설가계정

其他資產及遞延資產 qitazichan ji diyanzichan(치타 쪽초안 지 띠엔 쪽초안): 기타 및 이연자산

171 無形資產 wuxing zichan(우싱 쪽초안): 무형자산

181 遷延資產 diyan zichan(띠안 쪽초안): 이연자산

191 待處理財產損益 dai chuli caichan sunyi(따이 츠우리 차이초안 쑰이): 고정자산처분손익

流動負債 liudong fuzhai(리우뚱 후우자이): 유동부채

201 短期借款 duanqi jiekuan(뚜안치 지에쿠안): 단기차입금

202 應付票據 yingfu piaoju(잉후우 파오쥐): 지급어음

203 應付帳款 yingfu zhangkuan(잉후우 장쿠안): 외상매입금

204 預收帳款 yushou zhangkuan(위서우 장쿠안): 선수금

209 其他應付款 qita yingfukuan(치타 잉후우쿠안): 기타미지급금

211 應付工資 yingfu gongzi(잉후우 꽁쯔): 미지급임금

214 應付福利費 yingfu fulifei(잉후우 후우리 훠이): 미지급복리비

215 應交管理費 yingjiao guanlifei(잉쟈오 꾸안리 훠이): 미납관리비

221 應交稅金 yingjiao shuijin(잉쟈오 수이진): 미납세금

223 未付利潤 weifu lirun(웨이후우 리르운): 미지급이익

224 應交鄉村款 yingjiao xiangchankuan(잉쟈오 시앙초운쿠안): 미납항촌금

229 其他應交款 qita yingjiaokuan(치타 잉쟈오쿠안): 기타미납금

231 預提費用 yuti feiyong(위티 훠이용): 미지급비용

233 待扣稅金 daikou shuijin(따이커우 수이진): 미지급조세공과

長期負債 changqi fuzhai(초양치 후우자이): 장기부채

241 長期借款 changqi jiekuan(초양치 지에쿠안): 장기차입금

251 應付債券 yingfu zaijuan(잉후우 짜이쥐안): 사채

261 長期應付款 changqi yingfukuan(초양치 잉후우쿠안): 장기미지급금

所有者權益 souyouzhe quanyi(써우요저 취안이): 소유자권익

301 實收資本 shishou ziben(스서우 쪽뻔): 납입자본금

311 資本公積 ziben gongji(쪽뻔 꽁지): 자본잉여금

313 盈余公積 yingyu gongji(잉위 꽁지): 이익잉여금

321 本年利潤 ben nian lirun(嬖 니엔 리르운): 당기이익

322 利潤分配 lirun fenpei(리르운 훤페이): 이익처분

損益	sunyi(쑨이):	손익
501 產品銷售收入	chanpin xiaoshou shouru(초안핀 샤오서우서우르우):	제품매출수익
502 產品銷售成本	chanpin xiaoshou chengben(초안핀 샤오서우츠엉뻔):	제품매출원가
401 生產成本	shengchan chengben(성초안 츠엉뻔):	제조원가
405 製造費用	zhizaofeiyong(지짜오훼이용):	제조경비
503 產品銷售費用	chanpin xiaoshou feiyong(초안핀 샤오서우훼이용):	제품매출비용
504 產品銷售稅金及附加	chanpin xiaoshou suijin ji fujia (초안핀 샤오서우 쑤이진 지 후우지아):	제품매출세금 및 부가금
511 其他業務收入	qita yewu shouru(치타 예우 서우르우):	기타업무수입
512 其他業務支出	qita yewu zhichu(치타 예우 즈초우):	기타업무지출
521 管理費用	guanli feiyong(꾸안리 훼이용):	관리비용
522 財務費用	caiwu feiyong(차이우 훼이용):	재무비용
531 投資收益	touzi shouyi(더우쓰 서우이):	투자수익
541 營業外收入	yingyewaishouru(잉예와이서우르우):	영업외수익
542 營業外支出	yingyewaizhichu(잉예와이즈초우):	영업외지출

자료 2. 재무제표

1. 資 產 負 債 表

編制單位: 年 月 日

單位: 元

자 산	행차 년초 년말	부채급소유자권익	행차 년초 년말
流動資產:		流動負債:	
貨幣資金(화폐자금)		短 期 借 款(단기차입금)	
短期投資(유가증권)		應付票據(지급여름)	
應收票據(받을어음)		應付帳款(외상매출금)	
應收帳款(외상매출금)		預收帳款(선수금)	
壞帳準備(대손충당금)		其他應付款(기타미지급금)	
應收帳款淨額(외상매출금잔액)		應付工資(미지급임금)	
預付帳款(선급금)		應付福利費(미지급복리비)	
其他應收款(기타미수금)		應交管理費(미납관리비)	
存貨(재고자산)		未交稅金(미납세금)	
待扣費用(선급비용)		未付利潤(미지급이익)	
待處理流動資產淨損失(유동자산처분손)		應交鄉村款(미납향촌금)	
一年內到期的長期債券投資(유동성장기투자)		其他未交款(기타미납비용)	
其他流動資產(기타유동자산)		預提費用(미지급비용)	
流動資產合計(유동자산합계)		待扣稅金(미지급조세공과)	
長期投資:		一年內到期的長期負債(유동성장기부채)	
長期投資		其他流動負債	
固定資產:		流動負債合計	
固定資產原價(고정자산원가)		長期負債:	
累計折舊(감가충당금)		長期借款(장기차입금)	
固定資產殘額(고정자산잔액)		應付債券(사채)	
固定資產清理(처분고정자산)		長期應付款(장기미지급금)	
在建工程(건설가계정)		其他長期負債	
待處理固定資產淨損失(고정자산처분손)		長期負債合計	
固定資產合計		所有者權益:	
無形及遞延資產:		實收資本(납입자본금)	
無形資產(무형자산)		資本公積(자본잉여금)	
遞延資產(이연자산)		剩餘公積(이익잉여금)	
無形及遞延資產合計		未分配利潤(미처분이익)	
其他資產:		所有者權益合計	
其他長期資產		負債及所有者權益總計	
資產總計			

2. 損 益 表

編制單位: 年 月 日

單位: 元

項 目	행차	부월	본년누계
一. 產品銷售收入 (제품매출수익)	1		
減: 產品銷售成本 (제품매출원가)	2		
產品銷售費用 (제품매출비용)	3		
產品銷售稅金及附加 (제품매출세금 및 부가금)	4		
二. 產品銷售利潤	7		
加: 其他業務利潤 (기타업무이익)	9		
減: 管理費用 (관리비용)	10		
財務費用 (재무비용)	11		
三. 營業利潤	14		
加: 投資收益 (투자수익)	15		
營業外收入 (영업외수익)	16		
減: 營業外支出 (영업외지출)	17		
四. 利潤總額	20		

3. 利潤分配表

編制單位: 年 月 日

單位: 元

項 目	行次	本年實際	上年實際
一. 利潤總額 (총이익)	1		
減: 應交社會性開支款 (미납사회성지급금)	2		
應交所得稅 (미납소득세)	3		
二. 產品銷售利潤 (제품매출이익)	6		
減: 應交特種基金 (감: 미납특종기금)	7		
加: 年初未分配利潤 (가: 기초미처분이익)	8		
上年利潤調整 (전기순의수정)	9		
減: 上年所得稅調整 (감: 전기소득세수정)	10		
三. 可供分配的利潤 (처분가능이익)	11		
加: 盈余公積補虧 (가: 이익잉여금보충)	12		
減: 提取剩餘公積 (감: 이익잉여금)	13		
提取承包獎勵 (임원상여금)	14		
應付利潤 (미지급이익)	15		
四. 未分配利潤 (미처분이익)	20		

4. 財務狀況變動表

編制單位：	年度	單位：元	
流動資金來源和運用	行次金額	流動資金各項目的變動	行次金額
一、流動資金來源：			
1. 本年利潤	1	1. 貨幣資金	41
加：不減少流動資金的費用損失：		2. 短期投資	42
(1) 固定資產折舊	2	3. 應收票據	43
(2) 無形資產、遞延資產攤銷	3	4. 應收帳款淨額	44
(3) 固定資產盤虧(減盤盈)	4	5. 預付帳款	45
(4) 清理固定資產損失(減收益)	5	6. 其他應收款	46
(5) 其他不減少流動資產的費用和損失	6	7. 存貨	47
小計	12	8. 待扣費用	48
2. 其他來源：		9. 一年內到期的長期券投資	49
(1) 固定資產清理收入(減清理費用)	13	10. 待處理流動資產淨損失	50
(2) 增加長期負債	14	11. 其他流動資產	51
(3) 收回長期投資	15	流動資產增加淨額	52
(4) 對外投資轉出固定資產	16		
(5) 對外投資轉出無形資產	17	二、流動負債本年增加數	
(6) 資本純增加額 (減少資本以'-'號表示)	18	1. 短期借款	53
小計	21	2. 應付票據	54
流動資產來源合計	22	3. 應付帳款	55
二、流動資金運用：			
1. 利潤分配：		4. 預收帳款	56
(1) 應交鄉村款	23	5. 其他應付款	57
(2) 應交所得稅	24	6. 應付工資	58
(3) 提取盈余工積 (用 盈余公積補虧以'-'號表示)	25	7. 應付福利費	59
(4) 應付利潤	26	8. 應交管理費	60
(5) 應交特種基金	27	9. 未交稅金	61
(6) 調減上年利潤 (調增上年利潤以'-'號表示)	28	10. 未付利潤	62
小計	32	11. 未交鄉村款	63
2. 其他運用		12. 其他未交款	64
(1) 固定資產和在建工程淨增加額	33	13. 預提費用	65
(2) 增加無形資產、遞延資產及其他資產	34	14. 待扣稅金	66
(3) 債還長期負債	35	15. 一年來到期長期負債	67
(4) 增加長期投資	36		
小計	38	16.其他長期負債	
流動資金運用合計	39	流動負債增加淨額	69
流動資金增加淨額	40	流動資金增加淨額	70

Accounting System of the Rural and Small Town Enterprise (‘Xiangzhen Giy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hoi, Sang Moon

This study describes and analyzes the dramatic changes in the accounting system of ‘xiangzhen giye: 鄉鎮企業(the rural and small town enterpris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From July 1, 1993, the accounting system of the ‘xiangzhen giye’ launched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nd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accounting system of the ‘xiangzhen giye’ in China.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ain finance agency of the ‘xiangzhen giye’ is the Department of Finance. The capital of ‘xiangzhen giye’ comprises state capital, collective capital, corporation capital, individual capital and foreign capital.

Secondly, ‘jingying chengbao zerenzhi: 經營承包責任制(management contractor responsibility system)’ of ‘xiangzhen giye’ does not have any influence on its property and subordinate relationships. The ownership of ‘xiangzhen giye’ is subject to investors. In order to distinguish mutual rights and responsibilities, main finance agency of the ‘xiangzhen giye’, or board of directors and ‘chengbaoren: 承包人(contract)’ should be authenticated. The ‘chengbaoren’ provides security asset which regarded. Within the condition of contract, ‘xiangzhen giye’ should implement corporate finance accounting system. ‘Xiangzhen giye’ is able to dispense after-tax-profit complying with an order of corporate finance system, and add up contract dividend account. The ‘chengbaoren’ completes the parameters of the contract condition and ‘xiangzhen giye’ may pay ‘chengbao fenli: 承包分利(contract bonus)’ to ‘chengbaoren’ out of after-tax profit. Paying bonus to ‘xiangzhen giye chengbaoren’ will debit ‘weifu lirun: 未付利潤(unpaid earning account)’ about ‘xiangzhen giye’ corporate finance.

Thirdly, average labor wage of ‘xiangzhen giye’ should be lower than that of state-owned corporation in the same area, and the labor wage cost calculation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Labor wage cost standard system should conform to the average wage of public corporates in the preceding year. Implementing labor wage cost calculation system, ‘xiangzhen giye’ came to have the difference of paid wage from wage cost and realized the wage in ‘yingfu gongzi: 應付工資(unpaid wage account).’

Fourthly, in compliance with state regulation, ‘xiangzhen giye’ would separate the paid management expense of corporation. ‘yingjiao guanlifei: 應交鄉村金(unpaid management cost)’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credit side. This account represents the

payable management expense of ‘xiangzhen giye’ according to regulation. ‘Xiangzhen giye’, without labor union, should accumulate 1% of total labor cost for culture and sports activities, sepatate from management expenses.

Finally, before paying corporate income tax, ‘xiangzhen giye’ should spend 10% of its total profit for social expenditure aid. ‘yingjiao xingchunkuan: 應交鄉村金’should be added up in the credit side of account table.

최상문,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회계학과 교수

주소 :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Tel : (051)510-2563(O), (051)743-1675(H)